■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석유정제업 [ ] 등록신청서 [ ] 신고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4일 신고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생산 유종		

신청 (신고) 내용	정제 시설	시설명	정제능력	소재지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일
			kℓ/년			
	저장 시설	저장제품	총 규모(기수)	소재지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일
			kℓ(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 ]등록신청 [ ]신고 [ ]조건부 등록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수수료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 등록신청 또는 조건부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한국석유관리원		

< 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210㎜×297㎜(백상지 80g/㎡)